

◎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규정

제정 2008. 2. 11.
개정 2016. 1. 12.
개정 2018. 3. 22.
개정 2020. 1. 15.
개정 2020. 12. 29.
개정 2021. 7. 23.
개정 2022. 8. 17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 및 개최근거·목적) 본 대회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(이하 “본 대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규약 제4조제5호에 의거 도내 장애인의 체력향상, 우수·신인선수 발굴, 장애인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장애인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도내에서 개최한다. <개정 2022. 8. 17.>

제 2 조(주최, 주관) 본 대회는 경상북도와 본회가 공동 주최(이하 “주최측”이라 칭함) 하고, 개최지와 시·군지회가 주관하며, 본회는 본 대회 추진업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이사회의 자문을 받는다. <개정 2022. 8. 17.>

제 2 조의2(대회횟수) 본 대회는 1999년 구미에서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로 통산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제 2 조의3(대회 상징마크 및 대회 구호) 대회의 상징마크 및 대회 구호는 본회가 정하여 사용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제 2 조의4(대회표어) 대회의 표어 및 마스크트는 개최지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대회 기간 중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8. 17.>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제 2 장 대회개최

제 3 조(개최시기 및 결정) ① 본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4~5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연도는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<개정 2016. 1. 12.>

② 개최시기의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. <개정 2022. 8. 17.>

③ 대회기간은 2일간으로 한다. <신설 2021. 7. 23.>

제 4 조(개최지 선정) 본 대회 개최지는 경북도민체육대회 당해연도 개최지로 한다.

〈개정 2021. 7. 23.〉

제 5 조(경기부문) ① 본 대회 개최 종목 및 참가유형은 본회 생활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다만, 보급발전을 필요로 하는 경기는 이를 시범경기로 참가 시킬 수 있다. 〈개정 2016. 1. 12, 2022. 8. 17.〉

② 〈신설 2018. 3. 22, 삭제 2022. 8. 17.〉

제 5 조의2(경기종목) 본 대회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눈다.

① (정식종목) 시·군 간의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종목 중 본회 생활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종목을 말한다.

② (시범종목) 본회가 특별히 보급,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종목으로 생활체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범종목을 운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제 5 조의3(경기종목 채택 및 취소) ① (종목채택) 경기종목(정식·시범), 세부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본회 생활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,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.

1. 참가선수 : 최소 3개 시·군 이상의 선수를 구성하여야 한다.

2. 가맹단체 : 시·군지부를 최소 6개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,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

3. 경기요원 : 경기진행을 위한 경기요원(심판, 운영진 등)을 확보하여야 한다.

4. 등급분류 및 조정 : 종목별 특성에 맞는 등급분류를 확립하여야 하며, 세부 종목별 참가인원이 미달되어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협의하여 종목별 특성에 맞게 통합·조정할 수 있다.

5. 경기규칙 : 종목 특성에 맞는 경기 규칙, 경기 운영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(세부종목추가) 대회에 세부종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③ (종목취소) 본 대회 종목으로 이미 선정되었다더라도 제1항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. 〈개정 2022. 8. 17.〉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제 6 조(경기행사 제한) 대회 개최일 10일전부터 동대회 종료일까지는 각 가맹단체 및 시·군지부는 개별적인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22. 8. 17.〉

제 7 조(개최요강) 본 대회 개최요강은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6호에 의거 본회 생활체육위원회가 결정한다. 〈개정 2022. 8. 17.〉

제8조(대회참가) 본 대회는 각 시·군에서 신청한 개인 및 단체 팀만 참가 가능하며, 대회개최요강 및 가맹단체별 경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〈개정 2018. 3. 22, 2022. 8. 17.〉

제3장 참가신청

제9조(예선대회) 각 시·군지회는 본 대회 참가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예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 〈2022. 8. 17.〉

제10조(참가신청) 각 시·군별 예선대회에서 대표로 선발된 개인 및 단체팀은 대회 개최요강에 의거, 지정한 날짜까지 해당 시·군에서는 본에 참가 신청하여야 한다.

〈개정 2018. 3. 22, 2022. 8. 17.〉

제11조(경기운영) 본 대회의 모든 경기는 참가요강에 의하여 각 종목별 가맹단체가 운영한다. 〈개정 2022. 8. 17.〉

제12조(경기방법) 경기종목 중 비기록 경기는 토너먼트방식 경기로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일정 및 대진추첨) ① 종목별 경기일정은 각 종목별 가맹단체와 협의하여 본회가 결정한다. 〈개정 2018. 3. 22, 2021. 7. 23, 2022. 8. 17.〉

② 경기대진은 각 시군의 대표자 임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가 결정한다. 〈개정 2021. 7. 23, 2022. 8. 17.〉

제14조(경기심판) ① 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경기를 담당할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.

② 주심의 판결에 대한 장소(狀訴)는 당해 경기부문의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.

③ 당해 경기부문 심판부장의 판결에 대한 장소(狀訴)가 있거나 기타 판결되지 않은 심판에 관한 사항은 대회본부 심판부장 및 소청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.

제15조(부정선수) 참가선수가 부정선수로 판명되었을 경우 즉시 탈락시키며 심판 및 소청위원회는 즉시 단체상 시상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8. 17.〉

제4장 채점 및 시상

제16조(심사위원회) 단체상 시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에서 결정한다.

〈개정 2022. 8. 17.〉

제17조(구성) 심사위원은 주최기관, 종목별 가맹단체 임원 중 5명을 선임하여 구성한다. 〈개정 2022. 8. 17.〉

제18조(순위결정) 본 대회 of 종목별 순위는 개인 및 단체에서 상위 1, 2, 3위만 결정한다.

제19조(채점) ① 단체상 시상은 진흥, 화합, 응원, 공로상으로 구분한다.

〈개정 2016. 1. 12, 2020. 1. 15, 2022. 8. 17.〉

② 채점방법은 각 분야별로 채점하며 최고점수를 받은 1개 시 또는 군에 시상한다. 단, 동점일 경우 인구가 적은 시·군에 우선순위를 적용한다.

제20조(시상구분) 본 대회 of 시상은 경기 종목별, 단체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.

〈개정 2022. 8. 17.〉

1. 경기종목별 시상

- 개인 및 단체 1, 2, 3위 〈개정 2022. 8. 17.〉

2. 단체상 시상 〈개정 2022. 8. 17.〉

- 진흥상, 화합상, 응원상, 공로상 〈개정 2016. 1. 12, 2018. 3. 22.〉

제21조(시상방법) 본 대회 of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경기종목별 시상 : 개인 및 단체 1, 2, 3위에 메달 수여 〈개정 2022. 8. 17.〉

2. 단체상 시상 : 진흥·화합·응원·공로상에는 트로피 및 시상금 수여하며 시상 금액은 매년 대회개최 시상금 관련 예산에 편성, 소정의 금액 수여

〈개정 2016. 1. 12, 2018. 3. 22, 2022. 8. 17.〉

제 5 장 대 회 임 원 및 부 서

제22조(임원) 본 대회 of 임원은 본회 생활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〈개정 2022. 8. 17.〉

제23조(운영부서) 본 대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에 필요한 임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① 총무부 ② 경기부 ③ 기록부 ④ 심판부
⑤ 시설부 ⑥ 대외홍보부 ⑦ 성화부 ⑧ 의전부

제 6 장 소 청 및 처 리

제24조(소청심의위원회) 본 대회에 참가한 임원,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또는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.

제25조(구성) 소청심의위원회는 본회 부회장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 중 2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.

제26조(징계) 소청심의회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

1. 부정선수 여부 판정
2. 시·군 체점시 감점여부 결정
3. 기타

제27조(출장금지) 개인선수 및 단체는 본 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장하였다가 중도에 기권할 수 없다. 불참 및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본 대회에 출장을 금지할 수 있다.

제 7 장 개 · 폐회식

제28조(참가) 본 대회 개·폐회식에는 대회임원, 선수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.

제29조(일정) 개회식은 대회 첫날 오전, 폐회식은 최종 경기종료 후 거행한다. 단,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제30조(대회기) ① 본 대회 기간 중에는 대회기를 경기장에 게양하여야 한다.

② 대회기 이양은 폐회식에서 개최지 장애인체육회장이 본회 회장에게 반납하고 본회 회장은 차기 개최지 장애인체육회장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다.

<신설 2020. 12. 29, 개정 2022. 8. 17.>

제31조(선수·심판 대표선서) 선수 및 심판대표는 참가선수와 심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장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.

〈선 수〉

선 서

제 00 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대회규정을 준수하여 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 합니다.

선수대표 : ○○○
○○○

〈심 판〉

선 서

본인은 모든 심판을 대표하여 체육인의 정신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.

심판대표 : ○○○

제32조(행사요원의 선정) ① 공식행사요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대회개최 20일 전까지 본회가 선정 한다.

1. 총지휘자 : 1인
2. 참가선수대표 : 2인(남, 여)
3. 심판대표 : 1인
4. 성화최종주자 : 1인

② 성화최종주자는 선수 또는 선수출신인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개최지의 시·군지부가 개설되지 못한 때는 본회가 주관한다.

부 칙(2016. 1. 12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8. 3. 22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0. 1. 15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0. 12. 29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1. 7. 23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2. 8. 17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 <개정 2018. 3. 22, 삭제 2022. 8. 17.>

[별표 2] <개정 2018. 3. 22, 삭제 2022. 8. 17.>

[별표 3] <신설 2018. 3. 22, 삭제 2022. 8. 17.>